

의안번호	2216520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6.2.25.
추계번호	26D0574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억 2,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72억 3,100만원(연평균 34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69	140	142	144	146	641	128
정책지원관 증원	1,861	3,456	3,540	3,627	3,716	16,200	3,240
각종 계획 수립	285	—	—	—	—	285	57
각종 위원회 설치	13	23	23	23	23	105	21
합 계	2,228	3,619	3,705	3,794	3,885	17,231	3,446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광역 생활권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변경 시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16조(충남 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 치)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재량규정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음	

3	안 제23조~안 제2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하며, 통합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4	안 제28조(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정수는 80명 이내에서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의무규정
5	안 제34조(정책지원 전문인력)	-통합특별시의회의원 또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38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통합특별시 부교육감의 수는 2명으로 함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7	안 제39조(소방조직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을 두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8	안 제46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등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48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51조(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57조(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의무규정
12	안 제64조~안 제66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13	안 제72조(기본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4	안 제74조(기본계획심의회)	-통합특별시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를 둔	의무규정
15	안 제80조 ~안 제9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등)	-통합특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91조(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의무규정
17	안 제92조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96조~ 안 제97조(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등)	-통합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105조 (탄소중립도시종합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107조~ 안 제117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의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수소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122조~ 안 제137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육·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등을 위하여 지역대학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지역대학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교육부장은 통합특별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재양성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인재양성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138조 ~안 제141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우주, 인공지능, 우주 방산부품, 로봇산업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또는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142조, 안 제144조(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4	안 제149조, 안 제159조, 안 제160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5	안 제155조 안 제156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161조 ~안 제16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국내복귀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7	안 제167조 ~안 제169조(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등)	-통합특별시는 국방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입주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를 테크노폴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통합특별시장은 테크노폴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8	안 제170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농업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29	안 제178조 ~안 제180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연령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0	안 제185조 ~안 제186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충남대전최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1	안 제194조(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통합특별시장은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2	안 제216조(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정 및 지방교부세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3	안 제217조(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획)	-행정안전부 장관은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군사시설 인접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4	안 제231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 지원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235조 ~안 제237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240조 ~안 제244조(통합특별시미래돌봄특구 지정 등)	-통합특별시장은 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7	안 제246조 ~안 제256조(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등)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에 국립공주의과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특별시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건립하여야 하며, 국가는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특별시 내에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음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디딤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통합특별시장 등은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38	안 제259조 ~안 제275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음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9	안 제267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40	안 제278조(산림문화·휴양·복지에 관한 특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등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41	안 제287호(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도로 등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2	안 제291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대상섬의 지정, 개발대상섬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43	안 제292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분원을 통합특별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섬개발 관련 기업·기관 등의 집적단지와 휴양·편의시설 등을 갖춘 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44	안 제295조(통합특별시 갯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갯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갯별관리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45	안 제30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지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6	안 제307조(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의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광역생활권 지정)	×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16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3	안 제23조~안 제2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 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이양사무의 범위, 재정지원의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28조(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현행에 비해 의원의 정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원 정수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 정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5	안 제34조(정책지원 전문인력)	0	
6	안 제38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	미대상: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고 있으나, 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부시장, 부지사 수는 각 2명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39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장 직속 소방청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8	안 제46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근무지 변경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지원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48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	주민자치조직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등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51조(국가의 재정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57조(통합특별 교육교부금 지원)	-	미대상: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을 통합특별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합한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	안 제64조 ~안 제66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회 사무국 등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및 사무국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72조(기본계획의 수립)	0	
14	안 제74조(기본계획 심의회)	0	
15	안 제80조 ~안 제9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 기구 등)	×	-일괄처리기구 구성·운영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91조(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	투자공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공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추계하기 곤란함
17	안 제92조 (과학중심도시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0	

18	안 제96조~ 안 제97조(과학중심 도시육성위원회 등)	×	육성위원회 및 육성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하기 곤란함
19	안 제105조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0	
20	안 제107조~ 안 제117조(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1	안 제122조~ 안 제137조(영재학 교의 지정·설립과 운 영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2	안 제138조 ~안 제141조(첨단산 업 육성을 위한 행 정·재정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3	안 제142조, 안 제 144조(반도체, 방위 산업 및 치안클러스 터 연계 신산업화 지 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4	안 제149조, 안 제 159조, 안 제160조 (미래첨단산업 산학 협력 촉진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5	안 제155조 안 제156조(노후거 점산업단지 경쟁력강 화사업지구 지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6	안 제161조 ~안 제163조 (지방이전기업에 대 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7	안 제167조 ~안 제169조(국방산 업혁신클러스터의 조 성 및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28	안 제170조(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0	

29	안 제178조 ~안 제180조(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0	안 제185조 ~안 제186조(동물복 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1	안 제194조(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	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을 추정하기 곤란함
32	안 제216조(군사시 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정 및 지방교 부세 특례)	×	군사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정하기 곤란함
33	안 제217조(군사시 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획)	0	
34	안 제231조(여객자 동차운송플랫폼사업 자 재정지원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5	안 제235조 ~안 제237조(대중교 통 운영 지원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6	안 제240조 ~안 제244조(통합특 별시미래돌봄특구 지 정 등)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7	안 제246조 ~안 제256조(의과대 학 및 과학기술의학 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등)	×	-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국립치의학연구원, 공공의료재단,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설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8	안 제259조 ~안 제275조(인구감 소지역 관광산업 육 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39	안 제267조(국·공유 지 사용료 등 감면 특 례)	×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예측하기 곤 란함
40	안 제278조(산림문 화·휴양·복지에 관 한 특례)	0	

41	안 제287호(산림기반 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2	안 제291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섬발전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43	안 제292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4	안 제295조(통합특별시 갯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45	안 제30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하기 곤란함
46	안 제307조(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	×	통합특별시 내의 도농복합지역에 새로이 지정될 인구감소지역과 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사업 통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따른 감소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6조에 따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가정
 -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총 30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25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
 -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시행일을 고려하여 2026년은 각각 2회 개최를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며,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평균 운영예산을 준용함
 -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운영예산은 4억 1,100만원¹⁾이고, 평균 운영예산은 1억 275만원임
- 안 제34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령²⁾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에 관하여는 80명 이내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증원 여부 또는 증원 인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를 현 충청남도의회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정수를 합한 수로 함
 -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을 증원하면,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은 총 35명임

1) 행정실무원 임금,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예산 각목명세서)

2)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표 2] 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단위: 명)

구 분	의원정수	현행 정책지원관 정수	증원 가능 정책지원관 수
대전광역시의회	22	11	11
충청남도의회	48	24	24
계	70	35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³⁾의 평균인 72,157천원을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2조에 따른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92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105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안 제17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 안 제217조에 따른 군사시설 인접지역 지원 종합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의 예산 금액을 준용함
- 제정안의 각 계획 중 안 제72조에 따른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주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제정안의 다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5년을 수립주기로 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4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 안 제27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안 제291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안 제295조에 따른 갯벌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수당은 변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	57,708

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위원회 성격에 따라 안 제74조의 기본계획심의회의는 연간 1회, 그 외 위원회는 연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심의회의와 갯벌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20명 중 12명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⁴⁾는 전체 위원 30명 중 20명으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15명 중 8명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⁵⁾을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하고, 2026년의 경우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등은 6개월분만을 반영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안 제16조)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20명, 실무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15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
- (실무지원단)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의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2026년 평균 운영예산(1억 275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4) 제정안 제278조제3항은 통합특별시장 소속의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위원회를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안 제16조에 따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10	20	20	20	20	90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8	15	15	15	15	68
실무지원단 운영비	51	105	107	109	111	483
합 계	69	140	142	144	146	641

주: 단수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34조)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2026년 연봉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평균한 연간 평균연봉은 7,216만원임
- 추계 결과, 정책지원관 35명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6,300만원 등 2026년부터 5년간 119억 8,400만원으로 예상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은 6개월에 해당하는 보수만 반영

[표 4]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6 (6개월)	2027	2028	2029	2030	합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72	35	2,525	1,263	2,586	2,648	2,711	2,776	11,98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6,500만원 등 5년간 15억 8,500만원으로 예상됨

[표 5]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165	340	349	360	371	1,5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⁶⁾)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6,700만원 등 5년간 25억 3,2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259	530	543	556	569	2,4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400만원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174	-	-	-	-	1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8억 6,100만원 등 5년간 16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8]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1,263	2,586	2,648	2,711	2,776	11,984
기관부담금	165	340	349	360	371	1,585
기본경비	259	530	543	556	569	2,457
자산취득비	174	-	-	-	-	174
합 계	1,861	3,456	3,540	3,627	3,716	16,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각종 계획 수립(안 제72조, 안 제92조, 안 제105조, 안 제170조 및 안 제217조)

- 안 제72조에 따른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 기본계획, 안 제92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육성 기본계획, 안 제105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안 제17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 안 제217조에 따른 군사시설 인접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대전광역시 “대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금액 5,7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5개 계획 모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 기본계획 등 5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 기본계획	57	-	-	-	-	57
과학중심도시육성 기본계획	57	-	-	-	-	57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57	-	-	-	-	57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	57	-	-	-	-	57
군사시설 인접지역 지원 종합계획	57	-	-	-	-	57
합 계	285	-	-	-	-	2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각종 위원회 설치(안 제74조, 안 제278조, 안 제291조 및 안 제295조)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간위원 수는 기본계획심의회·갯벌관리위원회의 경우 12명,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20명,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경우 8명으로 하고, 회의참석수당은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00만원 등 5년간 1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당 지급 횟수	기본계획심의회 (12명×연 1회)	12	12	12	12	12	60
	산림복지심의위원회 (20명×연 2회)	20	40	40	40	40	180
	섬발전심의위원회 (8명×연 2회)	8	16	16	16	16	72
	갯벌관리위원회 (12명×연 2회)	12	24	24	24	24	108
	소계(a)	52	92	92	92	92	420
회의참석수당(b)		0.25	0.25	0.25	0.25	0.25	0.25
계(a×b)		13	23	23	23	23	105

주1: 제정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므로, 2026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갯벌관리위원회 회의개최횟수는 1/2만 반영

주2: 단수 조정에 따른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억 2,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72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69	140	142	144	146	641
정책지원관 증원	1,861	3,456	3,540	3,627	3,716	16,200
각종 계획 수립	285	—	—	—	—	285
각종 위원회 설치	13	23	23	23	23	105
합 계	2,228	3,619	3,705	3,794	3,885	17,2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